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상호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09
------	-----

2015. 6. 30.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8일, 조상호의원(찬성의원 17명)
-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12일
-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2015. 6. 30)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조상호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상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시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나, 의견청취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바, 이를 명확히해 원활한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시에는 60일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8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현행 조례상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전 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의견청취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개정안은 사용요금 최초 결정시 최초요금 징수시작 60일전에 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명문화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용요금의 결정과정을 투명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나. 민간투자사업 운영 개요

- 민간투자사업은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에 속했던 도로, 항만, 철도, 환경시설 등의 각종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부문이 담당해 추진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1990년대 이후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 활성화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¹⁾」 제정을 계기로 활성화되었음.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르면 2014년 12월 말까지 협약이 체결되어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총 662개, 총투자비는 99조 4천억원임²⁾.
-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확충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편의 증대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오던 민간투자사업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재정부담, 신규사업 발굴 한계 등으로 최근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이후 민간투자사업 규제완화 및 절차개선 등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내실화 조성에 집중하고 있음.
- 서울 시도 현재 도로, 도시철도, 주차장 분야에서 24건에 6조 790억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대폭 개정되었음.

2) 「2014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2015년 3월 발행)

〈표〉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현황

(시의회 동의 기준, 단위:억원)

분 야	계		도 로	도시철도	주 차 장
	건수	사업비			
계	24	60,790	7건 (23,905억원)	5건 (36,159억원)	12건 (726억원)
운 영 중	13	11,097	1(우면산터널)	1(도시철도9호선)	11(장안동주차장 등)
공 사 중	3	15,373	2(강남순환, 용마터널)	1(우이~신설 경전철)	-
협 상 중	7	27,995	4(은평새길, 평창터널, 서부간선, 체물포)	2(신림선, 동북선)	1(남현동)
검 토 중	1	6,325	-	1(면목선)	-

- 특히, 민간투자사업의 지나친 재정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 철도 9호선의 경우 2013년 10월 협약변경을 통해 기존의 최소 운임보장방식(MRG)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재정지원 방식을 변경해 운영 잔여기간 동안 약 3조 2천억원의 재정부담을 절감하는 등 민간투자사업 내실화를 위해 노력중임.

다. 사용요금 최초결정시 의견청취 기한 명시(안 제8조)

- 안 제8조는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시 요금 징수시작 60일 전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규정해 사용요금 결정과정의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함.
- 현행 조례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각 사업의 준공 후

사용요금 최초결정전과 운영 중 요금인상시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의견청취 시점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었음.

- 개정안은 이미 시행중인 최초 사용요금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를 보완해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되며, 관련법령과 현재 추진중인 시의 민간 투자사업의 요금결정 일정을 고려할 때 실무적으로도 큰 무리가 없는 조치로 판단됨³⁾.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3) 협약일정상 강남순환도로, 제물포터널의 경우 운영개시일 60일 이전, 서부간선도로의 경우 5개월전까지 최초통행료를 서울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말미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단,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 시에는 최초요금 징수 시작 60일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사용요금의 의회 의견청취)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준공된 시설에 대해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과 운영 중 요금을 인상하는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제8조 (사용요금의 의회 의견청취) ----- ----- ----- ----- ----- . 단,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 시에는 최초요금 징수 시작 60일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부 칙 <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